



[등록번호 : 20080200110]
[최초등록일 : 2008.08.08.]
[최종등록일 : 2026-02-02]

르뽀미에 (LePommier)

정 보 공 개 서

(주)에스피씨삼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서울(양재)사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양재동)

대표전화 : 02-2276-5000

대표FAX : 0505-073-055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사업기획팀 02-2276-5166(변경 될 수 있음)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9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4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5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8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4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6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9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51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 에스피씨 삼립	르뽀미에 외 2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68.6.29	1968.7.1	김범수	02-2276-5000	0505-073-0555
	법인등록번호	110111-0090516	사업자등록번호	133-81-2224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사업(경영)기간	주소
대표이사	김범수	르뽀미에 외 2	2024. 12.~현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사내이사	김진억		2025. 3.~현재	
사외이사 /감사위원	이임식		2021. 3.~현재	
	전성기		2021. 3.~현재	
	제프리존스		2023. 3.~현재	
계열회사 (대표자)	(주)파리크라상 (도세호)	파리바게뜨	1988. 9.~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 기막골로31번길 18(상대원 동)
		파스쿠찌	2003. 11.~현재	
		잠바주스	2014. 9.~2024. 8.	
계열회사 (대표자)	(주)빅바이트 컴퍼니 (이광,김준수)	잠바주스	2024. 9.~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 기막골로31번길 18(상대원 동)
계열회사 (대표자)	비알코리아(주) (도세호)	베스킨라빈스	1987. 3. 15.~현재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던킨도너츠	1995. 1. 15.~현재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영업표지는 빗은, 르뽀미에, 따빠오입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

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르뽀미에]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르뽀미에	(佛:사과나무)
상 호	르뽀미에 ○○점	-
상표(서비스표)	르뽀미에	상표 등록번호 : 40-0713113-0000 상표 등록번호 : 40-0700874-0000 상표 등록번호 : 40-0700877-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49876-0000
광 고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등)를 통한 다양한 광고 홍보 활동 및 PROMOTION 실행	-
그 밖의 영업표지		40-1452490-00-00
		미등록 상표
		미등록 상표

※ 르뽀미에는 2007년 직영 1호 보라매점과 가맹 1호 여의도점의 개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순수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로써, 그 외의 사항은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295,399,585	906,290,707	389,108,878	3,314,547,280	89,513,471	53,236,796
2023년	1,293,732,304	874,719,614	419,012,689	3,433,322,296	91,734,322	50,228,465
2024년	1,240,796,531	760,966,764	479,829,767	3,427,920,218	94,968,717	86,491,702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I] 연결 재무제표 첨부)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범수	대표이사	2024. 12. ~ 현재	(주)에스피씨삼립 부사장	대표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이임식	사외이사/ 감사위원	2021.3. ~ 현재	前.대구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전성기		2021.3. ~ 현재	렉스젠(주) 경영고문	
	제프리존스		2023.3. ~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진익	사내이사	2025.3. ~ 현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등기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3	3,19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에스피씨삼립	가맹사업 경영	1999. 6. ~	따빼오 - 제과점 가맹사업 (등록번호:20080200109)
		가맹사업 경영	2006. 7. ~	빛은 - 떡류, 한과류 가맹사업 (등록번호:20080200076)
		가맹사업 경영	2007. 8. ~	르뽀미에 - 제과점 가맹사업 (등록번호:20080200110)
		가맹사업 경영	2014. 2. ~ 2024. 2.	잇투고 (등록번호:20140503) - 패스트푸드 가맹사업 자진취소
대표이사	김범수	(주)에스피씨삼립 대표이사	2024. 12. ~ 현재	따빼오 - 제과점 가맹사업 (등록번호:20080200109) 빛은 - 떡류, 한과류 가맹사업 (등록번호:20080200076) 르뽀미에 - 제과점 가맹사업 (등록번호:20080200110) 잇투고 (등록번호:20140503) - 패스트푸드 가맹사업 자진취소
계열회사	(주)파리크라상	가맹사업 경영	1988. 9. ~ 현재	파리바게뜨 - 제과점 (등록번호:20080200064) 파스쿠찌 - 커피 전문점 (등록번호:20090100251)

계열회사	(주)빅바이트 컴퍼니	가맹사업 경영	2024. 9. ~ 현재	잠바주스 - 스무디/음료 가맹사업 (등록번호: 20140964)
계열회사	비알코리아(주)	가맹사업 경영	1987. 3. ~ 현재	베스킨라빈스 - 아이스크림 (등록번호:20080500015) 던킨도너츠 - 도너츠 (등록번호:20080500016)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Le Pommier (서비스표)	 제43류	2006. 7. 5. 출원 2007. 6. 12. 등록	출원 41-2006-0017173 등록 41-0149875-00-00	(주) 에스피씨 삼립	2027. 6. 12.
르뽀미에 (서비스표)	 제43류	2006. 7. 5. 출원 2007. 6. 12. 등록	출원 41-2006-0017174 등록 41-0149876-00-00		2027. 6. 12.
LE POMMIER BAKEHOUSE	 제43류	2018. 4. 25. 출원 2019. 2. 28. 등록	출원 40-2018-0056110 등록 40-1452490-00-00		2029. 2. 28.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위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르뽀미에] 가맹사업 현황

1. [르뽀미에] 를 시작한 날: 2007년 8월 2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7년 4월 5일)

2. [르뽀미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 에스피씨삼립	르뽀미에	서남석	2006.7. ~ 2011.3.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조상호	2011.3. ~ 2013.3.	
		윤석춘	2013.3. ~ 2016.1.	
		최석원	2016.1. ~ 2019.3.	
		윤석춘	2016.6. ~ 2017.8.	
		이석환	2019.3. ~ 2019.10.	
		이명구	2017.8. ~ 2020.3.	
		황종현	2020.3. ~ 2025.11.	
		김범수	2024.12. ~ 현재	

3. [르뽀미에] 업종

영업표지	업종	
르뽀미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제과·제빵	베이커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르뽀미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2	2	4	2	2	2	1	1
서울	3	1	2	3	1	2	2	1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르뽀미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	-	-	-	-	2
2023	2	-	-	-	-	2
2024	2	-	1	-	-	1

6. [르뽀미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르뽀미에]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 에스피씨삼립	빛은	2008 0200076	기타 외식	44/6	35/5	31/4
		따삐오	2008 0200109	제과제빵	47/0	42/0	29/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비알코리아(주)	베스킨라빈스	2008 0500015	아이스크림/ 방수	1,653/67	1,687/65	1,706/1
		던킨도너츠	2008 0500016	제과제빵	633/74	631/59	616/45
	(주)파리크라 상	파리바게뜨	2008 0200064	제과제빵	3,419/27	3,389/26	3,327/24
		파스쿠찌	2009 0100251	커피	494/27	477/32	460/25
	(주)빅바이트 컴퍼니	잠바주스	2014 0964	음료 (커피 외)	8/22	8/21	12/9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							5곳 미만
서울	1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8. [르뽀미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르쁘미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점	2,70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르쁘미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전국	(주)에스피씨삼립 양재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양재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범수	02-2276-5166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없음(가맹본부)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4년]에 [르쁘미에]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3]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418	 (비공개)	-	-
판촉		(비공개)	418	 (비공개)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

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선택시티 1	031-732-211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주)에스피씨삼립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르뽀미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4,400	체결즉시	이하 설명	이하 설명	이하 설명
기획관리비	550	체결즉시			
교육비	1,100	체결즉시			

① 가맹비

귀하는 당사로부터 가맹점 개설 전 및 초기에 물품, 인력, 판촉, 홍보, 신규반품, 초기 운영매뉴얼 등을 지원 및 제공받는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비는 가맹점 개설 전 및 초기에 위의 지원 및 제공의 대가로 모두 소모되며, 가맹점 운영 기간 중의 영업표지의 사용,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 운영매뉴얼 업데이트 지원, 기타의 정보 제공 등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② 기획관리비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확정된 가맹점 실·내외 인테리어, 설계도면 등에 따른 관련 공사를 감독할 수 있고,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

맹계약 체결 시 기획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 중 리뉴얼(부분 리뉴얼 제외) 등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획관리비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③ 교육비

귀하 및 그 종업원(귀하를 포함한 과정별 기준인원 준수)은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교육계획에 따라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맹계약 체결시 교육비(강사료 및 시설사용료 등)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의 요청에 따른 수강신청인원이 과정별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육이 개시된 이후에 가맹점사업자는 교육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체결 즉시	이하 설명	이하 설명

※ 가맹점 개설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0,000천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① 계약이행보증금

귀하는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맹계약 체결 시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맹계약 갱신 시 맹계약 만료 전의 매입대금 또는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점포 이전 또는 확장) 시 매입대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맹계약 기간 중 매출 활성화로 인하여 1개월 기준 일평균 매입대금의 5일간 합산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7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종료 시 전액(이자제외)이 귀하에게 반환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당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반환되게 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VAT 포함)
합계	16,050
가맹비	4,400
기획관리비	550
교육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VAT 대상 아님)

※ 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및 그 범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예치기관에 예치한 경우 및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희망자에게 지급하며, 반환의 범위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 이행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계	-	41,330 ~78,000	4,125 ~ 7,785	-	-	-
필수설비 (정착물 등)	가맹본부	11,000 ~22,000	1,098 ~ 2,196	개점2일전 완납	설치 전 계약취소	미지급 시 개점불가
최초 공급 상품	가맹본부	2,200 ~5,500	219 ~ 549	-	상품 미공급시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22,000 ~ 38,500	2,196 ~ 3,843	① 선급금 40% : 계약 체결시 ② 중도금 50% : 전체공기 80%이상 진행 ③ 잔금 10% : 오픈 후 검수 완료 후	착공 3일전 계약취소	33.06㎡기준 추가공사 제외 (전기증설, 냉난방 등)
간 판	협력업체	3,300 ~ 5,500	329 ~ 549	개점 2일전 완납	착공 3일전 계약취소	전면 4m 기준
디스플레이 및 집기류	협력업체	1,000 ~ 2,000	99 ~ 199	① 계약 시 100만원 ② 잔 금: 개점 2일 전	착공 3일전 계약취소	진열면적에 따라 상이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미지정	330 ~ 1,100	33 ~ 110	개점 후 7일 이내	개점 전 계약취소	오픈행사 비용 등
	종업원 (인건비)	1,500 ~ 3,400	149 ~ 339	월 단위 약정일	(그간 소요 비용 제외)	판매2명 이하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평균 비용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가 점포선정의 주체임. 점포개발 담당자 선정 (02-2276-5166)	가맹희망자의 상담 및 접수 → 가맹희망자 인터뷰 → 가맹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점포 물색 및 확정(상권 시장성 및 타당성 검토(실사) → 해당점포 임대차 계약 → 가맹 계약 → 점포 실측 및 레이아웃 확정 → 도면 작성 및 확정 → 교육 → 인테리어 계약 및 시공 → 점포 오픈

※ 상권 및 점포특성 등에 따라 기준 면적 이하의 점포도 오픈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상권조사(시장조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선정주체

당사는 자체조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조사의뢰에 따른 결과를 기초로 귀하에게 가맹점 개설지역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지역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은 귀하가 합니다.

선정기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상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적인 위치선정	지역상권	서울, 대전,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 범위를 의미
	지구상권	영등포구, 성북구, 강남구 등과 같이 중규모 범위를 의미
	지점상권	여의도동, 돈암동, 압구정동 등과 같이 소규모 범위를 의미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점 및 지구내의 충분한 잠재고객이 있는가? (배후지 세력 참고) 2. 동업종의 분포 현황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3. 해당 지점내의 고객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4. 거리, 교통, 주차장 등의 접근의 용이성은 어떠한가? 5. 상품 매입이나 기술의 구입은 용이한가? 6. 창업자의 생활환경(자녀의 학교 문제, 교통 등)에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위치선정시 확인사항	통행량	유동인구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함.
	주변상가분석	1차 상권 내의 주변상가가 발전이 계속 되는 곳인지 아니면 쇠

		퇴기에 접어든 곳인지 면밀히 분석
	접근성	고객의 흡인이 용이하도록 점포의 입구나 건물목 상태, 고객의 주요 유동 방향 등을 확인
	시계성	눈에 잘 띄는 장소인가 여부 확인
	연출성	입주 예정 점포의 과거 영업을 판단, 응용하여 상권내의 특색있는 점포 이미지를 연출
점포조사	점포를 계약하기 전,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여부, 도시계획 여부, 점포 건물의 노후정도 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위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담은 점포 조사표를 작성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점포에서 근무할 종업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실시하는 입문교육 및 서비스 보수과정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입문교육은 직무이론, 점포실습, 제조실습으로 구분되며, 개점일 전까지 귀하 또는 그 종업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은 교육 수수료 이후로 연기 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계약서 작성 등 고용 및 근로관계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당사의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④ 귀하의 제조기사 등 고용인원은 귀하의 책임과 선택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고,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가 제조기사의 용역제공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점포 내에서의 제조, 근로 등과 관련된 책임 역시 귀하에게 있으므로, 제조기사가 표준제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르뽀미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	해당없음	-	-	-	-
리스료	-	해당없음	-	-	-	-
광고분담금		별도협의				
간판류임차료	-	해당없음	-	-	-	-
영업지역보장금	-	해당없음	-	-	-	-
회계처리비용	-	해당없음	-	-	-	-
POS 유지보수	가맹본부	22/월	익월 5일	-	월정기 고정금액	부가세별도
교육비	가맹본부	1,100	계약후 즉시 (예치)	-	교육시작후	기사1명기준 (점주신규 채용시)
용역 제공비	가맹본부	2,200~3,300/월	익월 4일	-	월정기	기사공급 계약체결시 해당
점포 환경개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P. 46 참조

물품대금 등	가맹본부	별도사항	별도설명	-	-	별도설명
지연이자	가맹본부	법정이자율 (연 6%)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유지보수비용	협력업체	5,500~11,000	협의 후	-	-	6개월 단위 또는 필요시

① 음원사용료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장 내 사용하는 배경음악(BGM; Background Music)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법음원 사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브랜드이미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BGM 제공 전문 업체와의 거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BGM 제공 전문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합법적인 음원사용료를 매월 BGM 제공 전문 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원사용료 수금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음원 사용료의 수금업무를 가맹본부가 무상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음원사용료는 물가상승 등 업체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제휴카드 등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증진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휴 할인 및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영에 따른 발생비용의 부담은 각 제휴업체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분담절차	비고
기타 제휴 프로모션	50% 이상	50% 이하	월 단위 (또는 행사 종료후) - 대금청구서 반영	기타 제휴프로모션 시행시 프로모션 내용, 부담률 등을 사전 고지.

※ 가맹본부는 추가적인 제휴를 하거나 제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분담비율은 통상 가맹본부 50%이상·가맹점사업자 50%이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③ POS 장비

가맹점사업자는 제품, 상품 등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POS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POS 장비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무상AS기간 이후 유지보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미 선택 시 POS정비 및 수리에 관련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항목	비용	비고
POS 장비	22/월	구매 시로부터 1년간 무상AS(사용자 과실 제외)
유지보수		출장비 무료, 부품교체비용 별도

④ 물품대금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등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물품 대금 등에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공급마진 등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의 80% 이상 미수금이 발생 시 또는 5일 단위 결산청구 대금을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가맹본부는 POS 등을 통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최고 후 5일 이내에 미수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80% 미만으로 되지 않거나 지연 미수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사전고지 없이 시정요구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품 등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위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합니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본부는 사전에 제시한 품질·위생기준 등 가맹점운영상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실태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점검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식품위생 관련 점검	[별지 IV] 식품위생관련 금지행위 및 조치 기준	수시	SPC삼립 품질기획팀 대행
가맹점 경영상태 점검	[별지 VI] 참고	정기	직접 또는 제3자 대행

※ 각 점검/평가 결과 **식품위생 교육 등 보수교육을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를 둘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각종 시정조치, 클레임 등 영업활동 관련 사항을 당사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르뽀미에]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

해야 할 비용은 없으나, 제품대금, 환경개선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분 등을 정산하여야 하며, 사전에 당사에 통지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 및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가맹계약 기간 동안 [르뽀미에]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르뽀미에]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가맹점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2주일 이내에 점포의 내·외부를 귀하의 비용으로 복구시켜야 하고, 르뽀미에 ‘상호 등’ 부착된 장비와 물품으로서 귀하의 소유인 것은 귀하의 부담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 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 즉시 상환
- ② 가맹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점포 내·외부 영업표지 제거 및 개수 기타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가맹점사업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 ③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적용된 모든 물품에 대한 사용·게시 금지 및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제거
- ④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 메뉴얼, 지침 등 가맹점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반환
- ⑤ 가맹본부의 소유물 또는 가맹본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물품 및 비용의 반환
- ⑥ 영업표지의 제거, 물품의 반환·폐기 등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의 부담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대표적인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르뽀미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르뽀미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부가세미포함)	비고
(주)에스피씨지에프 에스	계열회사		(비공개)	
(주)샤니	계열회사		(비공개)	
(주)에스피엘	계열회사		(비공개)	

※ 상기 경제적 이익의 내용은 추정액으로, 특수관계인의 관련 매출액(2024년도에 특수관계인이 납품한 위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모두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원부자재비용, 판매관리비용, 유통비용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위 경제적 이익이 곧 특수관계인의 실제 이익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르뽀미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르뽀미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 상품 일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경고 3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4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제품 등 내역 [별지 III] 참고

※ 제재수준은 가맹본부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적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갱신이 불가 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① 규격 제품 사용 준수 의무

- (㉠) 규격 제품이란 가맹본부가 생산, 공급하는 제품이나 사전에 인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사전에 인정한 제품 등을 구매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 보관, 진열, 판매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공급품 또는 인정하는 수준의 물품을 매입하여 제품 판매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규격 제품 사용에 관한 점검

- (㉠) 가맹본부는 규격제품의 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점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가맹본부는 점검결과 규격 외 제품사용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사항

- (㉠) 가맹본부는 제품규격서를 작성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규격제품 변경 사항 발생 등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POS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 (㉡) 이 외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식품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위반행위를 분류한 후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재한 별지 IV의 식품위생관련 금지사항 및 조치 기준의 표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다만, 휴면 생지류 및 원재료 자체의 판매와 가맹계약상 명기된 영업장소(가맹점포) 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상품명	권장가격(단위:원)/봉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식빵 외	[별지 Ⅲ] 참고	POS 공지	2023.12월 기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제과점	르뽀미에, 따빼오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다만, 가맹본부와 그 계열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르뽀미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르뽀미에 제외).

- ①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나 이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
- ② 인수합병 등으로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 ③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기의 “동일한 업종”이라 함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제품의 품질,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서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00m內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지도)표시 ● 경계선 미포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 → 상대방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르뽀미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대리점 외	삼립스마일(제이 에스유통) 외	크랜베이 월넛 등 526품목	세부업종이 다름, 반완제품 판매

※ 품목별 상세내역 [별지 IX] 참조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아래표와 같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얌스토어	https://www.yaamstore.com/	베이커리 제품류	비대면 거래

※ 품목별 상세내역 [별지 X] 참조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7%	34%	59%	0%

※ 르뽀미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은 없으며,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은 르뽀미에 가맹점 매출과 기타 유통채널(직영점, 특납 등)의 매출액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르뽀미에는 온라인 공용 및 전용 판매상품은 없으며,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과 공용 판매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르뽀미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최초에 최소 [3]년 이상 이며, 갱신계약기간은 1년 간입니다.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3항, 제38조 제3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 방침을 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운영 매뉴얼에 정한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운영 매뉴얼에 정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본부가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타 가맹계약상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41조 제2항
○ 노후된 점포시설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 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 가맹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가맹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가맹계약의 중요사항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32조의2 제5항
○ 사용한 인력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당사가 시정요구 내지는 관련 교육을 받으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되오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32조의2/ 별지Ⅳ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종료,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종료 또는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수정안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변경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계약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안이 관계법령 기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의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장비 등을 6년 정액법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것을 가맹점사업자가 인수한 점포
- 가맹본부가 당초 직영점 개설을 목적으로 확보하였던 점포
- 가맹본부가 임대차·인테리어·장비설치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였던 점포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것을 가맹점사업자가 인수한 점포 - 가맹본부가 당초 직영점 개설을 목적으로 확보하였던 점포 - 가맹본부가 임대차·인테리어·장비설치 계약등을 직접 체결하였던 점포 	환매 신청 →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 → 환매확정	문의: 사업기획팀 (02-2276-5166)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수인이 당사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 ○양도인은 개업관련 비용을 감가상각한 잔액을 합산한 비용으로 하고, 양도인은 당사에게 여하한 명목의 추가금액 지급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사업기획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사업기획팀 (02-2276-5166)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신규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비 지급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로부터 신규반품지원, 인력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양수인에게 제12조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갱신 거절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② 양수인에게 제41조 제1항의 계약 해지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③ 양수인에게 제41조 제2항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있거나 양수인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양수인의 가맹사업 관련 의무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양수인이 동종의 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⑤ 양수인이 르뽀미에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⑥ 기타 양수인이 르뽀미에를 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기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의 내용 중 가맹본부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양수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승인은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 승인 거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서면통지	모든 권리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범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르뽀미에]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제과점 영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사업기획팀 (02-2276-516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르뽀미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 ~ 23:00 (16시간)	휴무일은 당사의 정책적 판단으로 시행함.	문의: 사업기획팀 (02-2276-516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포의 개점 및 개점시간을 준수치 못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포사정에 의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과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Q(Quality : 품질), F(Fresh : 신선도), I(Item : 제품구색), C(Cleanness : 청결, 위생), S(Service : 서비스) 및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등에 관한 정기 및 수시점검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ㄴ) 가맹본부는 Q, F, I, C, S 및 5S와 관련하여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제품 등 견본 징구 요구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ㄷ) 당사는 위 점검 결과에 따라 생크림 제조의 권리 및 판매장려금 등의 인센티브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내·외부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위생관리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점포위생관리의 항목 및 용역위탁시 비용·분담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역	도급단가 (1회)	작업 비용		작업 주기	비고
			분사 지원	가맹점 부담		
점검	제과 설비	22,000	10,000	12,000	1회/월	-
	음료 설비	30,000	-	30,000	1회/월	café점
청소	간판 청소	33,000	10,000	23,000	2회/년	어닝과 청소 동시 실시
	주방 청소	150,000	-	150,000	요청시	-
	어닝 청소	200,000	-	200,000	2회/년	추가시 개당 10만원
	에어컨 청소	25,000	-	25,000	2회/년	그릴 1개당
방역	구서,살충작업	17,000	2,000	15,000	1회/월	-
	포충등	25,000	-	25,000	1회/월	-

※ 위생관리업체에 용역위탁시 해당 용역비용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영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점포위생 종합관리작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협의 하에 점포위생 종합관리작업의 내용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용역비용은 월별로 청구되고, 가맹점사업자는 위생관리업체의 작업원이 점포위생종합관리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작업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부분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는 위생관리업체에게 익월 15일 이내에 가맹계약서상 약정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또는 일단의 지역(시, 군, 구) 내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비용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기업 광고와 제품 등의 광고 등을 총괄하고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지역에서 또는 일단의 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광고비용은 가맹본부 및 그 지역 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가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② 판촉비용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촉행사 및 상품교환권, 무료구매권, 할인권 등에 대한 판매·사용 등의 행사기간 및 유효기간·금액 등 주요사항을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협조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판촉행사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인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판촉행사와 관련한 비용부담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비용부담은 신제품 판촉행사(14일), 제품별로 100% 반품 판촉행사, 80% 반품 판촉행사 등이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지적인 광고 및 판촉행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계획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 상호간 협의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담긴 자료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상담 및 접수	- 전화문의 및 상담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정보공개서 16쪽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인터뷰	- 가맹희망자 자격 심사 - 가맹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및 설명	D-45	
점포개발 및 점포확정	- 점포에 대한 상권 시장성 및 타당성 검토 - 현지 실사로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33~35	
출점 승인	- 최종 협의	D-31~32	
가맹계약 체결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30(1일)	
점포실측 및 레이아웃	- 장비배치, 시공 등 기초자료 - 현장설명회 통한 시공업체 선정	D-27~29(7일)	
도면 작성 및 협의 확정	- 투자비 산출	D-22(2일)	
가맹점주 교육	- 종업원의 제조교육, 점포실습 - 영업교육, 관련법규 교육	(15~20일)	
인테리어 계약 및 시공	- 가맹점 사업자와 시공업체 계약 - 실내외 공사 착수 - 인테리어 공사일정 확인	D-20(15일)	
오픈 준비	- 오픈행사 협의 - 장비(정착물) 입고 - 초도상품, 원재료 입고	D-5(3일)	
그랜드 오픈	- 시험 생산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2(1일)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 및 금액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는 제공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직접 제공 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일시 등을 귀하가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에 귀하와 가맹본부가 각각 서명날인한 후 교부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임직원과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 중재, 조정,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이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점포의 화재, 건물 등의 파손 및 붕괴, 천재지변(홍수 등)의 사유로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양수도와 동시에 환경개선을 하는 	별지 V 참고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경우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개점행사 시행기간 (3~5일)	건별 상이	
반품지원	신제품 또는 기획제품(시즌) 중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반품지원	반품지원 품목 지정상품에 한함	건별 기간 상이	건별 반품 지원 금액 상이	
	동절기/하절기 반품지원	제품, 상품류에 한함	동절기 (10월~4월) 하절기 (5월~9월)	동절기 (공장도가의 1.5%) 하절기 (공장도가의 20%)	매출 에누리 율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점포 입문 교육	1) 제조 교육 -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생지류, 원재료, 완제품 소개, 제품 공정 교육 등 2) 영업 교육 -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 : POS 기능, 규정유니폼, 표기사항 등 -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준수 사항 : 입금규정, 개점시간, 점포운영 - 판매 기법에 대한 교육 : 진열, 포장, 접객, 판매, 서비스, 클레임 등 3) 관련법규 교육 - 식품위생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점포 실습 교육	실습위주 (가맹점사업자 제조기사 판매사원)	오픈전 15일부터 (숙련도에 따라 기간증감)	필수 교육 교육장소 : 직영점 실습장소 : 직영점
보수 교육	1) 복무 규정 2) 판매 & 서비스 3) 점포관리 & 5S 4) 점포위생 & 법규 5) 제품 교육	점포방문 또는 집단 지도교육, 제품 실습 및 지도교육	1주당 2회 이상	상시교육
기타 교육	1). 소집 교육 - 세미나, 정책설명회, 지역 회의	집단교육	비정기	-

1) 교육비 환불 기준

상기 금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입문교육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과정별로 50% 미만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과정에 한하여 50%를 반환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종업원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 고
입문 교육	가맹점사업자 7日	1,100	-
보수 교육	30분	실비	-
기타 교육	상황별 교육	발생 시 청구	비정기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그 종업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점포 입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9조(교육 및 교육비 부담)에 따라 개점은 교육수료 후로 연기 하여야 합니다.

보수 교육은 가맹점의 정상 운영과 재계약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이며 보수 교육을 성실히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29조 제5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경영상태 점검 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보라매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보라매아카데미타워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7년 9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47,16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목 차

1. [별지 I] 연결 재무상태표
2. [별지 II] 연결 손익계산서
3. [별지 III] 판매상품의 권장가격
4. [별지 IV] 식품위생관련 금지행위 및 조치 기준
5. [별지 V] 점포환경개선
6. [별지 VI]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 점검
7. [별지 VII]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8. [별지 VIII]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9. [별지 IX]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 공급품목
10. [별지 X]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 공급품목
11. 기타
 - 정보공개서수령확인증
 - 가맹점사업자의 장래점포 예정지 인근 현황
 -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지 I] 연결 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II] 연결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Ⅲ] 판매상품의 권장가격

구분	제품명	권장 권장가격(원)
베이커리제품	64겹페스트리	4,900
	갈릭토스트	2,700
	고구마케익1호	20,000
	골든쿠키볼	6,000
	낙엽페스트리	2,500
	단팥도너츠	2,000
	달콤러스크	6,000
	달콤한양금모카빵	3,800
	더블치즈스콘	2,100
	딸기쉬폰	23,000
	레인보우마카롱(5입)	6,000
	레인보우케익	24,000
	마늘러스크	6,000
	마늘크로와상	2,800
	맛있는롤케익	5,000
	맛있는초콜케익	5,000
	매콤치킨고로케	2,100
	몬테크리스토 1/2	2,800
	미니롤(초코)	3,300
	미니애플파이	700
	맛있는딸기롤케익	4,700
	미니참쌀도너츠	2,700
	미니치즈찰도그	1,500
	미니딸기파이	3,900
	바스크치즈케이크	6,500
	반미마늘스틱	개당 1,200
	블루베리롤케익	9,000
	블루베리쉬폰	22,000
	빵드미식빵	4,500
	뽕미파이(애플파이)	2,000
	소보루빵	1,800
	소시지빵(낙엽빵)	2,200
	소시지 페스트리	2,800
	소프트에그타르트	1,300
소프트뽕미파운드	3,800	

쉬폰에반하다-블루베리	16,000
쉬폰에반하다-딸기	16,000
쉬폰에반하다-초코	16,000
쉬폰에반하다-화이트	16,000
스모크소시지빵(할라피뇨)	3,000
스모크소시지빵	3,000
바닐라롤케익	9,000
아몬드스콘	1,500
아몬드크로플	2,500
에그페스트리	2,300
연유크림빵	4,500
완두앙금빵	1,800
완전소중한단팥빵	2,000
왕빅도그오리지날	2,600
우리쌀건포도브레드	3,200
우유스틱브레드(6입)	3,000
우유치즈롤(8입)	4,500
잡채고로케	2,200
정통슈크림빵	2,000
진한치즈케익2호	24,000
잡쌀파배기	1,500
잡쌀도너츠	1,600
초코코팅크로플	2,800
초코크런치케익1호	20,000
치아바타앙버터	3,200
커피빈	2,300
크로와상	2,000
크림치즈우유빵	1,800
통검정보리브레드 1/2	3,200
통밀감파뉴	3,600
통밀파배기	1,800
통밤가득밤식빵	4,500
판모스	4,000
플레인크로플	2,400
한조각씩크림치즈호두빵	4,500
한컵쿠키	4,000
홈스타일쿠키컬렉션	4,000

화이트케익2호	24,000
부드러운크림카스텔라	2,600
더블치즈볼	2,500(5입)
미니치즈케이크(딸기,바나나)	4,000
바게뜨소시지빵	3,500
바나나동글페스트리	3,200
바나나크로와상	3,500
빨미까레	2,700
올리브야채빵	개당 700
크라상소시지빵	3,200
크림치즈베이글	3,500
클럽샌드위치	6,900
통아몬등치킨샌드위치	6,900
티라미슈1호	23,000
티라미슈2호	29,000
햄감자말이페스트리	2,500
햄에그샌드위치	4,000
갈릭크림치즈볼	5,500
딸기샌드케익	5,500
부드럽고촉촉한 부.촉.식빵	4,800
블루베리스콘	2,600
블루베리 품은 소보로 페스트리	7,000
양버터스콘	2,800
유자글레이즈스콘	2,500
카스텔라우유스틱브레드	6,000
크림가득 팡도르	6,500
페퍼로니피자	6,500
에그타르트	1,500
쫄득참쌀브레드	5,000
슈크림데니쉬	2,000
소시지피자빵	2,000
딸기샌드케익	3,000
겹겹이페스트리식빵	4,600
퓌이테쇼콜라	2,000
크림로프데니쉬	4,000
오리지널핫도그	2,500
크림가득쿠키슈	2,300

생식빵	4,500
올리브치아바타	1,800
딤핑츄러스(8입)	5,500
미니롤(플레인)	3,300
다시만난크림치즈	3,000
빙빙크림치즈	2,300
야채넣은롤빵	3,500
주중발효단팥크림빵	1,600
초코소라빵	2,000
동글동글 미니도넛(12입)	6,000
갈비고로케	2,000
몽블랑스틱(갈릭)	7,900(3입)
몽블랑스틱(소보루)	7,900(3입)
생도넛(3입)	4,500
함박스테이크버거	3,500
허니카스테라	2,800
궁중꿀약과	5,000
씨앗폼은 호떡 고로케	2,000
청양고추크림치즈 고로케	2,000
탕종졸깃소금빵	2,300
모카크림빵	5,900
플레인머핀	1,400
블루베리머핀	1,600
초코머핀	1,400
딸기잼	5,900
사과잼	5,900
한라봉잼	5,900
모카빵	3,800
쁘띠모카빵	2,800
녹차카스텔라	12,000
딸기롤	12,000
땅콩샌드미니	1,500
로만밀식빵	3,200
밀크후레쉬팡	1,800
벌꿀카스텔라	12,000
부드러운버터롤	5,200
옥수수식빵	3,200

	초코롤	12,000
	치즈후레쉬빵	1,800
	토스트식빵	3,200
	폼격있는우유식빵	3,200
	LP크로와상(커피)	4,300
	LP크로와상(라즈베리)	4,300
	LP크로와상(플레인)	4,300
	구운고로케(청양,갈비,씨앗)	6,000
	초코머핀	1,400
	부드러운 썬썬케익	1,600
	부드러운 백설기썬케익	1,600
	미니파이(딸기,크림치즈)	3,900
	강원도옥수수빵	3,500
	진도썬빵	3,500
	미니꿀약과	4,200
	플레인베이글	1,600

[별지 IV] 식품위생관련 금지사항 및 조치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 점포환경개선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I]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 점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Ⅶ]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III]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IX]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 공급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X]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 공급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점사업자의 장래점포 예정지 인근 현황

가맹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위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 _____ (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2. 18.>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